

담배판매업 휴업·폐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상호(법인명)		전화번호	
	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소재지			
	사유			
	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	년	월	일부터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 [] 수입판매업 [] 도매업의 [] 휴업 []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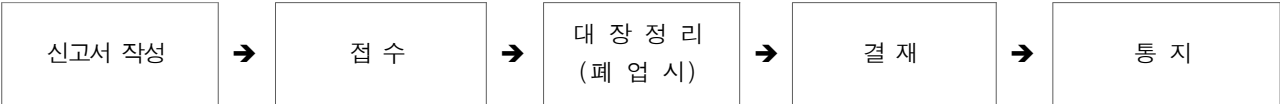
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
		없음

참 고 사 항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도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.

처 리 절 차



신고인

처 리 기 관 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담배업무 담당 부서(수입판매업)
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(도매업)